2014년 5월 26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smba.go.kr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5월25일(일) 06:00 이후 보도 가능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보 도 자 료

성장 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문의 : 창업진흥과 • 과장 : 김성섭 (042-481-4407) • 사무관 : 박은주 (042-481-4409)

해외 고급인재를 '새로운 기술창업의 저변' 으로

- 해외 인재 국내창업 시 창업비자+창업자금(5천만원) 패키지 지원 -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해외 고급인력의 국내 창업과 재외동포·우수 유학생 등의 귀환(歸還)창업을 촉진하여 국내 산업영역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 5월 26일(월)부터 창업사업화자금(5천만원)과 창업보육·연수, 멘토링 및 창업비자 취득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14년 외국인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14년 예산 20억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외국 고급기술 인력 창업의향 조사 결과('13.중소기업청) : 창업의향 있음(48.2%), 미정(24.1%), 의향 없음(27.7%)

□ 이에 앞서, **중소기업청은 법무부와 공동으로**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기술창업·이민을 촉진하기 위한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하고,

○ 외국인 창업관련 지원사업, 교육프로그램 등 관련정책을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으로 표준화하였다.**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 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 중기청은 또한, 창업 및 이민 지원사업 추진기관으로 **'글로벌창업이민센터'**(4개*)를 **지정**하여 OASIS 프로그램(붙임2 참조)과 창업사업화 지원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글로벌창업이민센터' 현황(4개)
- 창업비자 교육·상담 : 한국발명진흥회, 서울산업진흥원(서울 글로벌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기술벤처재단), 광주과학기술원(창업진흥센터)
- 창업자금 지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기술벤처재단), 광주과학기술원(창업진흥센터)

<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주요 역할 >

○ **(창업교육)** 창업비자 상담 및 법인설립 요건, 세법, 창업시책 등 교육
○ **(지식재산권교육)** 지식재산권 취득(출원)에 필요한 기초 및 심화 과목 등 교육
○ **(현장연수)** 벤처기업 등에서 현장연수 실시
○ **(창업공간)** 선발된 외국인 창업자에 대한 보육 공간 제공
○ **(네트워킹)** 외국인 창업자간, 국내VC 및 창업자 등 상시네트워킹 지원
○ **(창업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등 창업사업화 지원(5천만 한도)

□ **이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은** 사업기간 동안 우선 **'창업준비활동비자(D-10)'를 부여**받으며,

○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통해 **'창업교육 → 창업사업화 → 멘토링'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받은 후 '창업비자(D-8)'를 취득**할 수 있다.

* "창업 준비활동 비자" 및 "창업비자" 관련 붙임3 참고

○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창업비자 발급만을 희망하는 자**는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OASIS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다.

* 자세한 관련 정보는 www.oasisvisa.kr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참고

□ **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였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외국인, 재외동포 및 귀환 유학생 중 이번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창업넷(http://startbiz.changupne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 전담기관(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이 서류·발표·멘토링평가를 통해 창업자 역량·사업계획 등을 평가한 후 종합평점 상위 순으로 40여 개 팀 내외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글로벌 창업 활성화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박은주사무관(☎042-481-44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 사업 공고문**

2014년도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유망한 아이템을 보유한 외국인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14년도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의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
중소기업청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외국인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멘토링, 창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창업활동 지원

□ 모집규모 : 20억원, 40팀 내외

지원 대상	지원규모	신청자격
재외동포* 외국인 귀환 유학생	40팀 내외	☞ 거소증 소지자 또는 장기체류자격(비자) 취득자 중 · 예비창업자(팀 신청 시 팀원도 예비창업자) ·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13.1.1 이후 창업기업)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를 말함**
-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외국인 신청자 숙지사항(의무)**
① 한국어 및 영어로 사업신청서(계획서) 작성이 가능하여야 함
② 예비창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는 협약 종료 3개월 전 내국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법인 및 법인의 대표에 공동귀속
③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자(본인명의)를 유지하여야 함

□ 지원 금액 등

○ **정부지원금 지원 :** 최대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0% 이내)

구분	지원한도	협약기간
제조 분야	5,000만원 이내	10개월 이내
지식서비스 분야*	3,500만원 이내	8~10개월 이내

* **지식서비스 분야 : App, S/W, 콘텐츠, Web 등**
- 단, 시제품제작과 지식서비스를 융합하는 형태의 사업과제는 제조분야로 지원

** 현금 10%이상, 현물 20% 이내로 구성하되,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기존 임직원) 보유 기자재,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비 등으로 부담

○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지원 항목**

창업자 지원금	**시제품제작비**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등
	창업준비활동비	지재권 출원·등록비, 시험분석료, 사무용품비 등
	마케팅비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 외국인 (예비)창업자의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교육**(창업기본 및 역량강화 교육, 50h) **멘토링(10h), 기술·경영, 마케팅 지원**

* 지원프로그램은 글로벌창업이민센터별 상이

2.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4년 5월 27일(화) ~ 6월 27일(금), 16:00 까지**

○ **(신청방법)**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 시 글로벌창업이민센터(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광주과

학기술원)의 지원프로그램 등을 종합 고려하여 **1개 기관 선택**

□ **(신청자격) ①거소증 소지자 또는 ②장기체류자격(비자) 취득자 중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① **(거소증 소지자)**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로 신청일 현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이 가능한 자

* 출입국관리사무소(사무출장소)에서 발급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한함

② **(장기체류자격(비자) 취득자)**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로 신청일 현재 장기체류자격(비자)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 가능한 자

* 출입국관리사무소(사무출장소)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단,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은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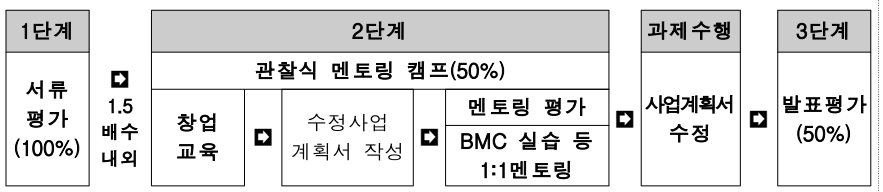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13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등**

□ **(예비)창업자 평가 및 선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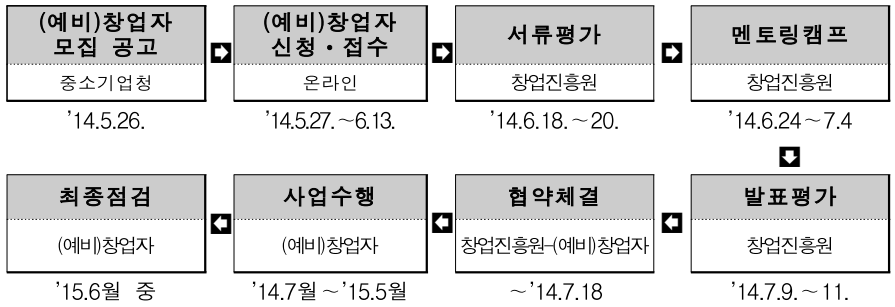
○ **선정절차**

< 선정 절차 >



* 선정 절차(서류평가 제외)에서 운영되는 교육, 평가 등은 신청자(대표자) 및 팀원이 반드시 참석, 이수, 발표 등을 하여야 함

3. 추진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창업넷에 변경사항 게시 예정)

4.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귀속됨**

5.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042)480-4331~2, 4334
- **글로벌창업이민센터**
  (한국기술벤처재단) (02)958-6695, (광주과학기술원) (062)715-2593

○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창업진흥원)** 정보전략팀, (042)480-4373

붙임2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OASIS-1 지식재산권 소양 기초교육

○ **(목적)** 지식재산권 취득(출원)에 필요한 기초과목 및 국내 체류에 필요한 소양 등 교육

○ **(내용)** 총 18시간(2주, 1일 2~3시간)을 교육하며, 모든 과정은 영어로 수업하고, 80% 이상 출석 시 수료로 인정

OASIS-2 지식재산권 소양 심화교육

○ **(목적)** 지식재산권 취득(출원)에 필요한 심화과목 및 국내 체류에 필요한 심화소양 등 교육

○ **(내용)** 총 30시간(12일, 1일 2~3시간)을 교육하며, 모든 과정은 영어로 수업하고, 80% 이상 출석 시 수료로 인정

OASIS-3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 **(목적)** 지식재산권 소양교육 우수 수료자 중 창의성 높은 우수 아이템에 대한 특허청 출원 지원

○ **(내용)** 총 출원절차중 출원비용 및 의견서제출 비용(전체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1인당 1건으로 제한하며, 지원 범위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한함(상표 제외)

☞ 우수 특허기술의 국내 권리화 촉진 및 기술 경쟁력 확보로 창업이민 정착지원 및 국내 산업발전에 이바지

OASIS-4 창업 소양 교육

○ **(목적)** 창업에 필요한 기본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제 창업에 필요한 소양 교육

○ **(내용)** 총 20시간(3주, 1일 2시간)을 교육하며, 모든 과정은 영어로 수업하고, 80% 이상 출석 시 수료로 인정

OASIS-5 창업 코칭 및 멘토링

○ **(목적)** 입지선정, 시장조사, 소비자 분석 등 실전 창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문코칭 및 멘토링 실시

○ **(내용)** 창업이민 선배, 창업전문가 등을 통한 1:1 전문 코칭 및 경험공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창업초기 실패율 최소화

☞ 전담 코칭 및 멘토링 지원은 1인당 최소 3개월 이상인 경우만 인정

OASIS-6 발명·창업 대전

○ **(목적)** 외국인의 창의적 지식재산 아이디어 및 창업아이템 발굴, 판로개척 및 투자연계 등 계기 마련

○ **(내용)** 예비 기술창업이민자 등의 우수한 발명·창업 아이템 발굴 및 기술거래, 투자상담 등 연계 계기 마련

☞ 유학생 유치 대학별 발명·창업 오디션 연계, 기업부설연구소, 투자기업 등과 연계, 입상자에 대한 포상

OASIS-7 창업 인큐베이션 졸업(창업공간 제공)

○ **(목적)** 창업이 준비된 예비 창업이민자에게 초기 창업에 필요한 창업공간 제공으로 안정적인 창업환경 제공

○ **(내용)** 지식재산권·창업지원 프로그램 우수 수료자 및 발명·창업대전 입상자 등에게 초기 창업 공간 제공

☞ 창업 인큐베이션 입주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해 졸업으로 봄

OASIS-8 법인 설립 지원

○ **(목적)** 창업비자 취득에 필수적인 법인 설립을 지원함에 따라, 성공적인 창업이민 정착 지원

○ **(내용)** 외국인 창업비자 취득을 위한 법인설립 준비절차 및 행정업무 지원

☞ 법인설립에 필요한 행정업무 및 법인등기 등을 종합지원

OASIS-9 창업 사업화 지원

○ **(목적)** 성공적인 창업이민 정책을 위해 창업 초기에 꼭 필요한 사항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성공적 창업이민 유도

○ **(내용)** 초기 사업화 자금 지원, R&D 연계, 창업 사후관리 등 지원

☞ 창업비자 소지자중 예비 창업자 및 창업 후 1년 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선발

붙임3 창업 준비활동 비자(D-10) 및 창업비자(D-8-4)

1. 창업 준비활동 비자(D-10)

1. 대상 자격

❍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및 기업투자(D-8)자격 중 기술창업(D-8-4)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구직(D-10) 체류자격≫

◈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체류자격 변경

❍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내·외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6개월 이내 취득예정자 포함)
- 창업이민 종합지원 시스템(OASIS)중 하나 이상 해당자(참여중인 경우 포함) 또는 창업이민 점수제의 '필수항목'중 1개 이상 해당자

❍ **(제출서류)** 학력증명서(학위취득 예정증명서), 창업준비 계획서(자유양식), OASIS 수료증(또는 참여확인증)이나 창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 해당 입증서류

3. 체류기간 연장

❍ **(체류기간 상한)** 최대 1년, 단, 지식재산권* 출원자 또는 창업이민 점수제 50점 이상 해당자는 최대 2년

* 지식재산권중 특허, 실용, 디자인만 해당

❍ **(제출서류)** 창업준비 계획서(체류기간 중 창업준비 내역 및 향후계획 포함), 학력증명서(최초 체류허가시 학위취득 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특허 등 출원사실증명서(특허청장 발행) 또는 점수제 50점 이상 해당 입증서류(1년을 초과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함)

4. 시행일자 : 2014. 4. 21.

2. 창업비자(D-8-4)

가. 대상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이하 **'기술 창업(D-8-4)'**으로 구분]

나. 허가 요건

○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일 것

* 국외 또는 국내에서 취득한 학위를 모두 인정하며, 학위를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

○ 점수제<첨부1>에 따라 총 340점 중 8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 하였을 것

- 필수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 보유한 지식재산권 등 **자신이 취득한 점수제 '필수항목'과 관련된 분야의 법인**

** 법인을 새로 설립한 것을 말하며, 기존 법인 인수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신청자 본인이 해당 법인 설립자여야 하며,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출원, OASIS-6·9의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보유(등록)·출원, 참여(선정)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전체(공동) 인원만큼 나눈 점수만 인정함

다. 제출서류(체류자격 변경 등)

○ 기본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수수료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학위증명서 사본

○ 점수제 해당 항목(및 점수) 입증 서류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입증서류
-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등 입증서류

라. 시행일자 : 2014. 5. 1.

【첨부 1】 창업비자 점수제 적용 기준

점수제 항목 및 점수

□ 창업비자 요건

○ 학사학위 이상 소지 + 법인설립 + **총340점 중 80점이상 점수 득점자**(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어야함)

□ 세부내용

① 필수항목 및 점수(210점) : 1개 이상 필수

구 분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지식재산권 출원		⑤, ⑦
	특허 또는 실용	디자인	특허 또는 실용	디자인	
배 점	80	50	20	10	각 25

② 선택항목 및 점수(130점)

구 분	②, ③	①, ④, ⑥	자본금 1억 이상	박사학위 소지	토픽3급↑ 또는 KIIP이수
배 점	각 25	각 15	15	10	10

<범례> : ①지식재산권 소양 기초교육(OASIS-1) 수료, ②지식재산권 소양 심화교육(OASIS-2) 수료, ③창업 소양교육(OASIS-4) 수료, ④창업코칭 및 멘토링(OASIS-5) 수료, ⑤발명·창업대전(OASIS-6) 1~3위 입상, ⑥창업인큐베이터(OASIS-7) 졸업, ⑦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OASIS-9)

<참고>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출원 및 OASIS-6, OASIS-9의 경우 2명 이상이 공동 보유(등록), 출원 및 참여(선정)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전체 수만큼 나눈 점수만 인정함